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법제상의 조치 등)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 나. 환경의 21세기를 대비해 광주 서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구역 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제6조, 제8조)
- 나.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학교,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함.(제9조, 제10조, 제11조)
- 다.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제112조)
- 라.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의 자체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0조)
- 마.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규정을 마련함.(제21조)
- 바.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3. 참고사항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 나.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
- 다. 지방자치법 제15조

4.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광주 서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그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와 주민들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언론, 학교,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환경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지역 환경평가제 도입 환경보존기금의 설치와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서구21위원회”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운영하며,
- 또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 과정에 구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는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21세기를 대비해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로써 기본 목적, 구와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관련 기관의 역할,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정보의 공개,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